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제109조의2(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의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4분기('25.10.1.(수) ~ 12.31.(수))

(2) 신청기간 : **'25.9.4.(목) ~ 9.23.(화),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3, 2024년 4분기 중 택1)

- **'25년 3분기 지정시설도 '25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나.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TEL : 02-2079-2461 / Email : kta7485@naver.com

붙임 25.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경수



수신자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인천광역시관광협회, 광주광역시관광협회, 대전광역시관광협회,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 경기도관광협회,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 충청북도관광협회, 충청남도관광협회, 전라북도관광협회, 전라남도관광협회, 경상북도관광협회, 경상남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9/04

사원 **박성현** 과장 **이민규** 국장 **강시은** 사무처장 **김병삼** 상근부회장 **박종달**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국-408 (2025.9.4.) 접수

우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관훈동)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www.ekta.kr

전화 02-2079-2461 전송 02-757-7489 / pshcs0907@ekta.kr / 공개